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 (찬성자 16명)

나. 의안번호 : 제 288 호

다. 발의일자 : 2022. 10. 17.

라. 회부일자 : 2021. 10. 21.

2. 제안이유

-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개방 여부에 따라 대피 시간 또는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학교운동장 등은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또한,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현행 시민에 부여되었던 대피소 운영 협력 의무를 삭제함(안 제 43조제2항)

나.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출입문 개방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3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현행 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¹⁾를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안 제5조 및 제43조제2항)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
- 지진 발생 시 대피 시민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에게 행정안전부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을 즉시 개방토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안 제43조제3항)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민의 <u>책무</u>)	제5조(시민 <u>의무</u>)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u>시민</u> 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 <u>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u> ----- ----- <u>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u> ③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에 따라 <u>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u>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인권담당관-2220, 공문시행일 2022. 3.11.)

- 먼저, 안 제5조에서 조제목을 현행 “시민의 책무”에서 “시민 의무”로 변경하는 사항과,
- 안 제43조제1항에서 현행이 “시민”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여 대피소와 대피경로 등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한편,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 “시장”에게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를 시민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사항의 이상 두 개 사안은 모두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7조2)에 따라 시 인권위원회가 2021년도에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55개(조례 46, 규칙 8, 규정 1)에 대해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서울시에 권고 ((붙임 1) 참조)한 것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43조제3항의 신설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에게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9월 기준 총 1,543개소(총 면적 870만㎡, 대피가능인원 1,055만명)로 이 중 학교운동장은 1,019개소이며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표] 참조).

[표] 지진옥외대피장소 현황('22.9월 기준)

총계	학교운동장	공원	기타
1,543	1,019 (대명중, 경문고 운동장 등)	471 (탄천근린공원, 문래공원 등)	53 (암사유적지구설주차장, 쌈지마당쉼터 등)

-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공원, 공터 등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별도의 개방조치가 필요 없으나 학교운동장의 경우는 주말,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출입문이 잠겨있어 유사시 즉각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 대피에 제약이 따르게 됨.
- 이에 시는 ‘20년 3월 행정안전부에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근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마련³⁾(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해 줄 것과, 교육부 및 시교육청에는 매뉴얼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이들 모두가 반영됨([표] 참조).

3)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5. 26.]

[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관련 서울시 건의 및 개정내용(행정안전부, 교육청)

서울시 건의내용(시→행정안전부) (‘20.3.18.)	행정안전부 개정내용 (‘20.7.16.)
<p>개방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및관리등) 관련 <u>시행령에 학교운동장의 출입문 개방 근거 포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개정(‘2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출입문이 즉시 개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u> - 야간·휴일 등 대피장소 출입문이 닫혀있을 경우를 고려, 지진발생시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시건장치 담당자 역할 안내
서울시 건의내용(시→교육부, 서울시교육청) (‘20.3.19)	서울시교육청 개정내용 (‘20.12.8.)
<p>개방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매뉴얼 개정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에 반영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u>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u>에 시민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市교육청 학생 안전 매뉴얼</u>개정(‘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진규모별 학교 조치기준</u> <u>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개방</u> (규모 4.0 미만 개방여부 학교장 판단)

- 따라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진규모별 조치기준, 시건장치 담당자의 역할 등 출입문 개방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붙임 2] 참조)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안전 매뉴얼」 ([붙임 3] 참조)등에 근거할 때,
- 동 개정안이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토록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은 유사시 조치사항에 대한 실행

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예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붙임 2] 행정안전부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 및 관리지침 관련 내용 발췌

[붙임 3] 서울시교육청 2020 학생 안전 매뉴얼 관련 내용 발췌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개정하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를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 2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 인권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인권영향평가팀을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2020년 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파악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권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무엇보다도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보호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 그 어느 때보다 재난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회·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대응 시스템은 인권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1년도에 서울시는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55개(조례46, 규칙8, 규정1)에 대해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영역 : 2개 인권영역(시민, 제도), 4개 평가항목

인권영역	평가항목
시 민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경우
	2)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미비한 경우
	3)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
제 도	4) 개편된 서울시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설정된 경우

□ 서울시의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평가내용 4개 항목에 대해 사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55개 자치법규 중 7개 조례(10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재난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합니다.

붙 임 :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부.

2022 년 3 월 7 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협의를 통하여 결과 도출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대학교수 등 참여
- 평가항목 : 4개 항목
-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 부여
 - ② 재난에 대한 교육 및 알권리
 - ③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 ④ 재난 수습주무부서 설정
- 평가결과
- 평가결과 총 7개 조례 10개 조항의 보완을 통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권고내용

평가항목	주요개정 내용	조항수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시민의 책무 → 시민의 의무	4
2)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가 미비한 경우	시민의 알권리 및 교육권 강행규정	3
3)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	재난 피해자의 인권보호	2
4) 개편된 서울시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재난 수습주무부서가 설정된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부서 수정	1

□ 자치법규 개정 권고목록(7개 조례 10개 조항)

연번	자치법규	관련조항	개정(안)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시민의 <u>책무</u>)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민 <u>의무</u>)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② <u>시민은</u>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u>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u>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② <u>시장은</u>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u>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u>
2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의 <u>책무</u>)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u>의무</u>)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시민의 <u>책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u>의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5조(시민의 <u>책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u>의무</u>)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2조(어린이활동 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2조(어린이활동 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등)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등)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u>보호를 위하여</u>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u>보호와</u> <u>사고·재난피해자의</u> <u>인권보호를 위하여</u>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u>(신설) 7. 사고 및 재난</u> <u>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u> <u>모든 활동</u>
7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긴급재난문자의 사용부서 및 기관과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u>안전출발본부</u> 가. <u>상황대응과</u> , 폭염, 한파, 지진, 화산	4. <u>안전출발실</u> 가. <u>안전지휘과</u> ,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붙임 2] 행정안전부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 및 관리지침 관련 내용 발췌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

2020. 7.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Ⅲ. 대피장소 관리

□ 대피장소 관리자 지정

- 대피장소별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 시군구별 총괄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 및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읍·면·동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
- 시설물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 지정
 - 대피장소 출입문의 신속한 개방을 위해 긴급 연락이 가능한 시설물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 지정
 - 규모 40 이상 지진 발생 시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출입문이 즉시 개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
 - ※ 야간휴일 등 대피장소 출입문이 닫혀있을 경우를 고려, 지진 발생 시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시건장치담당자 역할 안내 및 연락처 현행화

□ 대피장소 안내요원 지정

- (역할) 지진 발생 시 야외에 대피하고 있는 지역주민 등을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안내
 - 지자체 공무원은 대피장소 내 대피한 주민들에게 지자체 안내사항(지진 임시주거시설 연계여부, 피해 접수 등)을 안내
- (지정요건)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2명이상으로 지정
 - 지진 옥외대피장소 관리자(시설물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 등)
 - 이장·통장,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 ※ 필요시 재해약자 대피안내요원은 별도 지정

[붙임 2] 서울시교육청 2020 학생 안전 매뉴얼 관련 내용 발췌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20-104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생 안전 매뉴얼



카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진앙에 속해 있거나 진앙으로부터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는 적용을 권장하되, 그 외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 단, 지진규모별 학교조치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이 가능함

※ '진앙' 근처에 위치한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1단계 수준일지라도 가급적 대피하도록 권장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		40 미만	40~49	5.0 이상
근무 형태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근무 상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교직원 근무 대응조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교직원 근무 대응조직 활동
	야간 · 주말 · 학생이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에게 상황보고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복귀 대응조직 소집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반 근무 관리자 복귀 대응조직 소집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상황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항정실) (설치 여부는 학교장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항정실) 통신장비 준비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활동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활동 중지 임시휴업 조치 (피해 발생교)
학생 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 여부 학교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 및 구가 실시 · 반드시 명확한 안전 확보 후 학생 인계철수에 따라 실시
장애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심리적 안정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부터 자원인력 동행 정서·심리적 안정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피부터 자원인력 동행 정서·심리적 안정 및 보호
보호자 문자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청 문자수신 시 (규모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 사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 사항 안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일지 작성 상황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일지 작성 상황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일지 작성 상황 종료 후 특이사항 보고
학교운동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 여부 학교장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